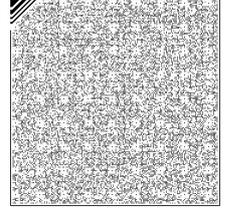




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 알림

1. 귀 협회 및 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

- 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1조(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)
- 나.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11261(2021. 7. 1.)

3.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대하여 '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'의 심의 결과, 불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코로나19 임시에방접종을 포함하여 국가예방접종에 적용됨

불임.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 1부. 끝.

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

수신자 대한의사협회장, (사)대한병원협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



보건연구관 김성남 팀장 전결 2021. 7. 1.
김지영

협조자

시행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11280 (2021. 7. 1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질병관리청 / <http://kdca.go.kr>

전화번호 043-719-8391 팩스번호 043-719-8379 / ksn1907@korea.kr / 비공개(5)

질병정보 궁금할때,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